

⑦개호 보험에 대하여



문의

혼조 시청 : 개호 보험과(Kaigo hoken-ka)

☎ 0495-25-1719

고다마 종합 지소 : 시민 복지과(Shimin fukushi-ka)

☎ 0495-72-1333

1 개호 보험에 대하여

「개호」는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게 되어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개호 보험은 노인의 간호를 가족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끌어가는 구조입니다.

개호를 사회 전체에서 이끌어 감으로서, 나이가 들어도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습니다.

개호 보험은 40 세 이상의 사람이 들어, 보험료를 서로 출납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2 요 개호 인정에 대하여

개호 보험은 요 개호 인정을 받음으로서, 개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개호 인정을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아래의 2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① 65 세 이상의 사람으로 몸이 불편하여, 일상 생활이 곤란해 진 경우는 요 개호 인정을 받음으로, 개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40 세부터 64 세까지의 사람은 정해진 16 종류의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 개호 인정을 받아 개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의 개호 보험에 대하여

혼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으로 재류 기간이 3 개월을 넘는 사람은 개호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재류 기간이 3 개월 이하의 경우에도 입국 목적 및 입국 후 생활 상태의 모습이 3 개월을 초과하여 혼조시에 있을 것으로 예상 될 때는 개호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호 보험과에서 보험증을 받은 사람은 주소나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보험증을 가지고 창구로 오십시오.